

[별표1]

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(제12조 관련)

체류자격 (기호)	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	체류기간의 상한
1.외교 (A-1)	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, 조약 또는 국제 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	재임기간
2.공무 (A-2)	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	공무수행기간
3.협정 (A-3)	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	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
4.사증면제 (B-1)	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	협정상의 체류 기간
5.무사증입국 (B-2)	관광·통과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하려는 자	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 간
6.일시취재 (C-1)	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	90일
7.단기상용 (C-2)	상담, 시장조사(견학포함), 업무연락(회의참석포함), 수입기계등의 애프터서비스, 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려는 자	90일
8.단기종합 (C-3)	관광, 통과, 방문, 요양, 친선경기, 단기연수, 문화예술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 기간 체류하려는 자[전람회, 선발대회등 각종 국제행사에 참가 또는 참관하는 자,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자, 학술자료 수집자들을 포함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제외]	90일
9.단기취업 (C-4)	일시홍행, 광고·패션모델, 강연등 수입을 목적으로 단기 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	90일
10.문화예술 (D-1)	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[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포함]	1년
11.유학 (D-2)	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	2년
12.산업연수 (D-3)	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	법무부장관이 따 로 정하는 기간
13.일반연수 (D-4)	유학(D-2)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의 교육기관 또는 단체등에서 비정규과정의 교육 또는	1년

	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[연수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 (D-3)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]	
14.취재 (D-5)	외국의 신문, 방송,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의 파견 또는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	3년
15.종교 (D-6)	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와 대한민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한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	3년
16.상사주재 (D-7)	외국회사의 본사, 지사 기타 사업소등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, 자회사, 주재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 [기업투자(D-8)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]	3년
17.기업투자 (D-8)	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경영이나 관리에 종사하려는 자 [투자자가 경영자로 그 기업에 파견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]	3년
18.무역경영 (D-9)	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무역 기타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[국내에서 채용하는 자와 기업투자(D-8)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]	2년
19.교수 (E-1)	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	3년
20.회화지도 (E-2)	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학교,외국어전문학원, 중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,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	1년
21.연구 (E-3)	대한민국내의 공·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[교수(E-1)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]	3년
22.기술지도 (E-4)	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·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	3년

23.전문직업 (E-5)	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, 회계, 의료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[교수(E-1)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]	1년
24.예술흥행 (E-6)	수입이 수반되는 음악, 미술, 문학등의 예술활동과 수입을 목적으로 연예, 연주, 연극, 운동경기, 광고·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	1년
25.특정직업 (E-7)	대한민국내의 공·사기관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1년
26.방문동거 (F-1)	가족동거, 피부양,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[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, 외교(A-1) 내지 협정(A-3)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, 거주(F-2)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처 또는 자로서 그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, 국민의 배우자 또는 자로서 거주(F-2)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]	3년
27.거주 (F-2)	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자, 그의 배우자 및 출생자녀와 국민의 배우자 [(거주(F-2)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서 미성년인자와 국민의 처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실이 없는 자 및 거주(F-2)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처가 된 자로서 1년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자외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거나 기타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]	신분존속기간
28.동반 (F-3)	문화예술(D-1) 내지 특정직업(E-7)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[산업연수(D-3)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]	동반하는 본인에 대하여 정하여진 기간
29.기타 (G-1)	외교(A-1) 내지 동반(F-3)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	6월